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18 | 2026.2.2 (2026.1.26~2026.2.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히 연구개발(R&D)에만 그치지 않고, 2035년까지 세계 1위 권톱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0,000명 육성, 양자기업 2,000개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산업화 로드맵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제2의 산업 대도약을 위한 산업 R&D 혁신 3대 방향과 3대 기반을 제시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초과하여 남는 경우를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내용과 체계 개편 및 폐업 단계에서의 중도 폐업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희망자에 대한 가맹 창업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는 등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 상 사기·횡령·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법안(유용원의원·부승찬의원 등 33인)**」 ,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행위의 내용과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나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의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

노사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인센티브,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실노동시간 단축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세제·기술·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6인)**」 ,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5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2.2.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2.3.~4. 양일간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실시됩니다. <정무위>에서는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금융)가 예정되어 있고, <기후노동위>에서는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산업통상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2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2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4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조정실) 1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민권익위원회)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회계기본법안(최은석의원 등 11인)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1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1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17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18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박상혁의원 등 13인) 18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 19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 20
- 국방인공지능법안(유용원의원·부승찬의원 등 33인) 2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22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22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3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24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24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2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2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26
-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7인) 27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2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2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29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29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3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6인) 30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5인) 3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1. 본회의 일정
-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기업지배구조] 2026년 정기주주총회 핵심 체크포인트 - 제3호 주주행동주의, 소수주주권 공시, 임원보수 리스크 관리
- [ESG] 유럽감독당국, 은행·보험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에 ESG 반영 가이드라인 최종본 공개(2027.1.1. 시행)
- [건설/부동산] 건축물분양법령의 개정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의 최신 동향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소송] 지배주주 사망 후 상속과 경영권 분쟁 - 경영권분쟁팀×가사상속팀 윈스톱 솔루션

- [기업인수/합병] M&A 계약상 MAE 조항의 해석 원칙과 최근 판례의 경향
- [노동]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소송]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들이 게임 개발사,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들의 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취소시킨 사례
- [금융]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보유한 주식을 추천한 뒤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 [소송] 신제품(NEP) 납품계약 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공기관운영법상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정받아 1심 판결을 뒤집고 2·3심에서 승소한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 '35년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목표, 양자기업 2,000개 육성 로드맵 수립 - 양자전환(QX)의 지역 거점이 될 '양자클러스터' 올해 7월 확정 - IonQ, 글로벌 양자인프라 국내 전격 도입, 국내에 3년간 1,500만 달러 투자	2026-01-29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양자 분야 마스터플랜인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히 연구개발(R&D)에만 그치지 않고,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0,000명 육성, 양자기업 2,000개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산업화 로드맵을 담고 있다고 밝힘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비전 및 장기목표(~'35)

비전		
양자기술로 NEXT-AI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양자-AI로 AI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기술	인력	인프라
-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 퀀텀-AI 글로벌 킬러앱 개발	- 양자인력 10,000명 확보 - 양자컴퓨터 활용률 세계 1위 달성	- 활용기업 2,000개 육성 - 국제 표준채택 세계 3위 달성

[양자컴퓨팅 : 'K-양자컴퓨터' 독자 개발 및 산업난제 해결]

정부는 국산'풀스택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한 제조 그랜드 챌린지(도전과제)를 추진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임. 또한, 자동차·제약·금융 등 분야에서 기존의 기술로 풀지 못한 산업 난제를 양자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하여 해결하는 '산업활용 사례(Use-case)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양자통신·센서 : 양자 보안 및 초정밀 감지 기술 조기 상용화]

정부는 전국 단위의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방·금융 등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영역부터 실증을 진행. 양자센서 분야는 의료·국방 등 분야에서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시제품 제작부터 상용화까지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

[인재·기반 : 30년 앞을 내다보는 '양자인재 1만명' 양성]

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하여 매년 100명의 핵심인재를 배출하고, 2035년까지 양자 분야 인력 1만 명 시대를 개막. 또한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년 장기 '전략형 기초연구 체계'를 도입

[산업생태계 : '양자기업 2,000개' 육성 및 국제 표준 선도]

양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을 대폭 확대하여 2035년까지 2,000개의 양자 기업을 육성. 또한 국내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표준 채택 세계 3위를 달성

한편, 정부는 산학연이 결집한 자생적 양자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5대 분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예정임. 클러스터는 첨단산업과 양자기술이 융복합하는 '양자전환(Quantum Transformation, QX)'의 거점이 될 것이며, 정부는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지침 마련('26.2월)을 시작으로, 상반기 공모(5월)를 거쳐 올해 7월 최종 지역을 확정할 계획임

* ①양자컴퓨팅, ②통신, ③센서, ④소부장, ⑤알고리즘

산업통상부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 제2의 산업 대도약을 위한 산업 R&D 혁신 3대 방향과 3대 기반 제시
-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산업 R&D 혁신방안과 26년 산업부 R&D 신규과제 추진(안) 논의

2026-01-28

산업통상부는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하였음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음.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①지역을 위한 R&D, ②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함.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첨단산업(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을 육성하는 한편, 1.5조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6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공공연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30년까지 '산연 공동연구실' 30개소를 구축

둘째,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로 재편. '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 15개를 개발. 자율운항선박·자율주행차 등 기존 제품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 R&D를 강화.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현장 실증('26년 10개)을 지원하고,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올해 본격 착수

셋째, R&D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도약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협력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R&D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는 '26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7년 대형과제로 본격 추진할 예정

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기반으로 ④R&D를 위한 규제 완화, ⑤혁신역량 강화, ⑥가짜일 버리기를 추진.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협약에 착수하여 특례를 적시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하여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에 투자사 등 시장수요를 반영. 성장 쏠주기 관점(박사후 연구원-신진연구자-스타엔지니어)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공학인의 날'을 제정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2-01 시행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 (제6조)

- 소기업·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연구 기자재·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②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 (제7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③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0조 및 제11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3조)

-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⑤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5조 및 별표 2)

-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2-01 시행

콘텐츠분쟁조정위원의 수를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합의권고, 직권조정결정,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절차 중지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50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6-01-26 시행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유예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의 범주에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추가하고, 의료기기의 독립적 활용도가 높은 의료기술로서 허가·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의료기술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2-28 시행 예정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철도사고 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사고조사를 하는 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1-26 시행

종전에는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교통상황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1.30. ~2026.02.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한 후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수게 되었고, 남은 전력을 전력시장 및 전기판매사업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초과하여 남는 경우를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개정 (제18조제1호)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mailto:climate@korea.go.kr) (전화: 044-203-3926, 팩스: 044-203-4578)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29. ~2026.03.10.
-------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기존 업무 중 위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와 새롭게 추가된 업무의 위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mailto:transport@korea.go.kr) (전화: 044-201-4329, 팩스: 044-201-5587)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30. ~2026.02.09.
-------	---------------------------	-----------------------------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에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인 위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 문의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mailto:regulation@korea.go.kr) (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1.28.
~2026.03.09.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 시정 및 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창업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내용과 체계 개편 및 폐업 단계에서의 중도 폐업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희망자에 대한 가맹 창업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그 밖에 정보공개서 관련 필수 서류나 서식 법제화를 통해 시행령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tel:044-200-4992) (전화: 044-200-4992, 팩스: 044-200-4978)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2026.03.10.

최근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해 채용, 협찬, 후원 요구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등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한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위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최고 벌칙 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청탁금지법상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보호조치 미이행, 불이익 조치,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등 행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의 일관성·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tel:044-200-7703) (전화: 044-200-7703, 팩스: 044-200-794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회계기본법안(최은석의원 등 11인)	2026-01-27 발의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 다양한 법인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2026-01-27 발의
현행법은 증권발행인에게 증권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19조제7항 후단,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제160조제1항)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6-01-28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음.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함.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임 (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6-01-28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음.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함.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임 (안 제35조의2제4항 등)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6-01-28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음.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함.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임 (안 제34조제4항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2026-01-29 발의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집합투자기구가 대다수의 수익자·주주 또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투자자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의견 제시가 일상적인 운용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에 명시하고,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발행주식총수 또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5항, 제188조제2항제2호, 제249조의8, 제249조의13제6항 및 제446조제41호의3)

정무위원회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박상혁의원 등 13인)

2026-01-30 발의

최근 통신사, 금융기관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등을 통한 2차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 법체계상 국가기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환류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

2026-01-30 발의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 기한인 60일을 꼭 채워 지급하는 소위 ‘늑장 결제’의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거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량 미정산사태로 인하여 영세한 납품업체들 다수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볼 때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에는 **현행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2026-01-30 발의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주요 재원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됨. 현행법은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금융 지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금융포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안 제47조제2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2026-01-29 발의

현행법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채권 투자를 통한 외화자금 조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또한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해외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1조제1항제1호)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

2026-01-30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린리모델링과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단열·설비 개선 등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초기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9 신설 등)

국방위원회

국방인공지능법안(유용원의원·부승찬의원 등 33인)

2026-01-27 발의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작전의 혁신, 지휘 결심의 고도화, 전장환경 예측능력 제고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방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국방 분야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방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운용·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국방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026-01-26 발의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전기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기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현행 규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의 시점과 구체적 절차, 통지 내용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관계 당국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나 산업 전반의 연쇄적 피해 및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행위의 내용과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2조의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2026-01-26 발의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 64조의5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2026-01-26 발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설계 구조나 알고리즘에 내재된 청소년 유해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이행 기한을 “지체 없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지연하는 원인이 될 여지가 있음. 아울러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역시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 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2026-01-2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최근 잇따른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과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민간 보안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인공지능 시스템의 확산과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복잡화 등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다변화 되면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보호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지정 대상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등에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시스템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공급망보안, 금융·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정보보호 수요에 정보보호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시스템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다수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에게는 양질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전반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정보보호기업 및 산업의 성장과 저변확대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3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2026-01-27 발의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등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튜브는 언론 매체가 아닌 통신 매체에 불과하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거나 접근하는 등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최근 사이버래커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정보를 정의하고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에 대응하는 온라인정보 등의 정정정보 게재 청구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에 준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기본권 충돌의 조화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026-01-27 발의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악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꾸며낸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큼

그러나 현행법상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정보통신망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심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2026-01-28 발의

현행법은 2023년 10월 제정되어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최근 양자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양자보안, 양자인공지능, 공급망 확보, 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기술·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나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2026-01-23 발의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의 개발 등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항공우주산업자는 항공기·우주비행체 등을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항공기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의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2026-01-26 발의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운영 방식이 유지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및 설계·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 구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기심사의 획일적 운영, 반복적인 시험·검사와 중복적인 자료 제출로 인해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허위 KS 인증 표시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유통 환경 확산으로 불법 제품·서비스의 유통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보다 실효적인 확인·조사 및 협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운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유형과 인증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심사 과정에서 중복적인 시험·검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심사의 일부 면제 또는 주기 연장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 사고와 같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KC 안전기준 간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 신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KS 인증을 취득·유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험·심사 비용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 비용 지원, 컨설팅 제공,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표준화 참여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2026-01-26 발의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등 10인)**

2026-01-27 발의

벤처기업은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 있음. 스톡옵션 제도는 미래에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 가치 상승분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금 여유는 없지만 성장성이 큰 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때 핵심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의 부여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반면, 미국은 스톡옵션의 총 부여 한도를 주주 간 합의로 정하고 한도 내 부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형태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사안을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스톡옵션의 행사 제한기한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벤처 및 스타트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2026-01-26 발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점차 복잡·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장 안전 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노사 간 안전 관련 정보와 전문성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사가 공통의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한정된 공공 감독 인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자율 안전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4항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2026-01-26 발의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의 기본이며 국가의 산업정책과 사회정의는 노동의 안전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속에서 산업재해는 여전히 매년 수천 명의 생명과 삶을 앗아가고 있으며 현장의 위험은 더 복잡하고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규제·감독 중심의 사후관리 구조에 머물러 있어 재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기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산업안전 관련 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산업안전 분야 R&D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아울러 산업안전의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위험을 기술로 진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관리할 제도적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정책은 행정과 연구, 현장이 단절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은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채 정책은 통계에 머무르면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약화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 책임이 제도적으로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방체계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나아가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지정, 자원조달 및 성과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기금의 투입이 현장의 혁신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안전 정책의 중심축을 규제에서 기술혁신으로 이동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산재 예방의 국가 책임을 과학기술의 언어로 실현하고 데이터와 기술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예방형 산업안전 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등 107인)

2026-01-27 발의

최근 국내 증시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이며,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과 관련하여,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간주하는 바, 준비되지 않은 법 시행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유예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2026-01-28 발의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 수준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장시간 노동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 경쟁력·삶의 질·저출생 대응 측면에서 노동시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장시간 노동은 단지 개인의 피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산업안전·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있음. 실노동시간은 연장근로뿐 아니라 업무량·인력운영 방식, 회의·보고 관행, 휴가 사용의 제약, 퇴근 후 연락·지시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도 있음

이에 **노사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인센티브,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실노동시간 단축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세제·기술·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 실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2026-01-29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멀티슈 등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하수관로 막힘 등 심각한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담 수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2026-01-27 발의

현행법은 조합원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모집 지연, 조합운영의 투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좌초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조합원 모집, 추가분담금, 조합의 자금운영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이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2026-01-27 발의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가 철거 도중 붕괴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년 간 공작물 해체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법」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해체 절차에 관한 제도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공백 없이 공작물의 축조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45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2026-01-28 발의

현행법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복합개발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 만큼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6인)

2026-01-29 발의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4%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동안 약 2,019억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하여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공을 확보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2조제4항)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등 15인)

2026-01-29 발의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총배송비의 경우 육지권과 제주, 도서 지역 간 격차가 각각 6.1배, 7.7배에 이름. 특히 육지권 총배송비는 감소하는 동안 제주, 도서 지역 배송비는 인상되고, 같은 업체·제품·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가 상이하여 합리적 기준 없이 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추가배송료의 신고·고지 의무 및 부당한 부과행위를 규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로 부과현황을 공시하고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2/2(월) 14:00	-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2/3(화) 10:00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4(수) 10:00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2/5(목) 10:00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금융)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 법안소위	2/4(수) 14:00	- 법안 심사
	고용노동 법안소위	2/5(목) 14: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2/6(금) 10:00	- 법안 의결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2(월) 10:30	AI산업 전력수급, 신규 핵발전소가 대안인가?	윤종오·정혜경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2/3(화) 10:00	대한민국 QUANTUM LEAP!을 위한 양자 포럼	최민희·김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2/4(수) 14:00	AI 농업로봇 보급 확산 정책토론회	이원택·임미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2/4(수) 14:00	외국인력 정책과 개선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김위상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2/4(수) 14:00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2026 한겨레 기업지배구조 국제포럼	오기형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 회의실
	2/5(목) 10:00	지속가능경영 공시 관련법 설명회	민병덕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대강당
	2/5(목) 10:00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세미나	최기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2/6(금) 10:00	희귀질환 사망자수 1위, 특발성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안상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2/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호(통권 제290호) 발간	국회도서관	
	2/4(수)	「금주의 서평」 제2026-5호(통권 제764호) 발간		
	2/2(월)	「NABO Focus」 제134호 발간	국회의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26(월)	「Data+」 제2026-1호(통권 제25호)	국회도서관	
	1/28(수)	「금주의 서평」 제2026-4호(통권 제763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6(월)	기업지배구조	2026년 정기주주총회 핵심 체크포인트 - 제3호 주주행동주의, 소수주주권 공시, 임원보수 리스크 관리
1/26(월)	ESG	유럽감독당국, 은행·보험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에 ESG 반영 가이드라인 최종본 공개 (2027.1.1. 시행)
1/28(수)	건설/부동산	건축물분양법령의 개정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의 최신 동향
1/29(목)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1/29(목)	소송	지배주주 사망 후 상속과 경영권 분쟁 - 경영권분쟁팀×가사상속팀 원스톱 솔루션
1/29(목)	기업인수/합병	M&A 계약상 MAE 조항의 해석 원칙과 최근 판례의 경향
1/29(목)	노동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30(금)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1/30(금)	소송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들이 게임 개발사,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들의 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취소시킨 사례
1/30(금)	금융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보유한 주식을 추천한 뒤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1/30(금)	소송	신제품(NEP) 납품계약 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공기관운영법상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정받아 1심 판결을 뒤집고 2·3심에서 승소한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